
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배 포	2020. 9. 18.(금)
		담 당 과	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
과 장		정 정 순 (☎043-719-6201)	
사 무 관		강 성 필 (☎043-719-6202)	
 식품의약품안전처			

수출국 유제품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·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‘잔류물질(항생물질, 잔류농약) 검사결과’를 제출하도록 하는 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9월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
- 이번 개정안은 현재, 국내의 ‘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’이 식육·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되었고(‘20.7.1), ‘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’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(‘20.8.26)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.
-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검사결과 제출)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* (현행) 식육·식용란/27개국 → (확대) 식육·식용란 + 원유·축산물가공품/65개국
 - (수입허용 목록 현행화) ‘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’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됩니다.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.
-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

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입법/행정 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